토론회 진행 일정

사회 : 이기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사무국장)

[제1부 접수 및 개회식]

13:30~14:00 접수등록

14:00~14:10 개회 내빈소개/개회/국민의례

14:10~14:15인사말김성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부회장)14:15~14:20축사한성심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

좌 장 : 진석범

(동서울대학 실버복지과 교수)

14:20~15:00 주제발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장창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5:00~15:10 휴식

15:10~15:20 토론1 임원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20~15:30 토론2 최영일 (성남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

15:30~15:40 토론3 최종복 (부천시춘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5:40~16: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00~16:10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 Contents

∯ **부 록**

53

♡ 인사말			
	김성애 (성님	기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부회장)	4
♠ 꾸제발	H		
"정남시 대	구목적복지회관	의 연황과 과제"	
	장정	현 (정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5
	☆ 토 론		
	임원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38
	칙영일	(정남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	43
	최종복	(부천시춘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45
		♣ 낄익응답 및 쫑합토론	

< 색깔간지 >

인 사 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다목적 복지회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복지 엄기정 국장님, 성남시 관계자분들과 시민과 소통하며 성남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남시의회장대훈의장님과,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양지동제1복지회 관 김성애 관장입니다.

성남시에는 22개의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동안 다목적복지회관은 사회 복지 전달체계상의 최 일선에서 주로 구시가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불균형과 사 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의 증가 및 자살률의 증대 등 핵가족화와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른 많은 사회적 과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불과 6개소로 서울이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성남보다 인구규모가 훨씬 작은 부천에 10개소의 복지관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성남의 복지관 수는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구시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밖에 없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이런 전달체계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으나 이제는 성남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과 함께 다목적복지회관의 특성화, 활성화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오늘의 이 자리가 성남시의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되고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실 장창현 성남시사화복지사협회장님과 토론자로 함께해주실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1년9월22일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부회장김성애

<백발간지>

□ 쭈제발표□

정남시 다목꺽복지회관 활정화 방안

장 항 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현황과 과제

장창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1. 목적

- o 성남시에 있는 22개의 다목적복지회관과 신축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분당과 구시가지간의 복지 불균형 해소
- o 민간사회복지시설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를 성남의 다목적복지회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적용 해 봄으로써 성남시의 모형을 개발하고 성남시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

3. 필요성

- o 성남시의 경우, 복지시설을 신도시에 우선 설치함으로써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복지시설 불균형이 심함.
- o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500~1,800평이상의 대형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 활용도가 매우 낮아 공실률이 높은 상태임
- o 따라서 구시가지에 있는 22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과 500평 이상의 대형 주민 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 전달

4. 검토사항

- o 성남시 중-장기 사회복지인프라 확충시 대상별 인구동향 검토 필요
- 1)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확대 필요
- 2) 장애인 인구 증가로 인한 구별 장애인복지관 확충 필요
- 3) 청소년인구 감소 및 위기청소년 증가에 따른 청소년 보호시설 확대

<표1> 성남시 인구전망(2015~2020)

구분	2010	2015	2020
총인구	1,032,812	1,081,749	1,108,857
노인인구(65세이상)	86,024	111,358	144,471
청소년(9~24세)	223,087	215,268	190,723
~~~~~~~~~~~~~~~~~~~~~~~~~~~~~~~~~~~~~	6.48%	9,52%	-

- * 출처 : 성남시청(2009), 『성남비전 2020 장기계획 최종보고서』
  - o 성남시 총인구는 2015년(108만명)에서 2020년(110만명)으로 증가 예상
  - o 성남시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총인구의 8.76%(86,024명)에서 2015년 10.3%(111,358명), 2020년 13%(144,471명)으로 증가 예상
  - o 성남시 장애인 인구는 2010년 6.48%에서 2015년 9.52%로 증가예상
  - o 성남시 청소년인구(9~24세)는 2010년 총인구의 21.6%(223,087명)에서 2015년 19.9%(215,268명), 2020년 17.2%(190,723명)으로 감소 예상
  - o 따라서 성남시 인구동향을 성남시 복지인프라 확충시 반영 필요

## I.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활용 복지시설 확충(안)

#### 1. 성남시 사회복지관 현황

#### 1) 지역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계 (980,190)	중원구 (258,093)	수정구 (241,070)	분당구 (481,027)
사회복지관	6	1	1	4
다목적복지회관	22	12	10	-

※ 출처 : 성남시 내부자료

o 성남시에는 2010년 12월 현재, 총 인구 98만명에 6개의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분당구가 48만명에 4개소(청솔/중탑/한솔/분당), 중원구가 26만명에 1개소(성남), 수정구가 24만명에 1개소(산성)를 설치하여 성남시 인구평균 163,365명당 1개소의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음.

(서울시 : 107,664명당 1개소 / 부천시 : 88,497명당 1개소 설치)

- o 인구 10만명당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필요함을 감안하면 <u>성남시에는 4개</u> 소가 더 <u>필요</u>한 실정임.
- o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시설규모에 따라 운영비(3억1천만원~4억1천만원)를 차등 지원받고 있음.

#### 2) 사회복지관 시설규모

시설규모	종합사회복지관 (2,000㎡이상) 구(가형)	종합사회복지관 (1,000㎡~2,000㎡) 구(나형)	사회복지관 (500㎡~1,000㎡) 구(사형)
평수	606평 이상	303~606평	303평 이하
 지원예산	4억1천만원	3억1천만원	-
복지관	성남/한솔/청솔/분당	중탑, 산성	-

#### 3) 다목적복지회관 현황

- o 다목적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1991년부터 시유지에 노인(경로당)과 유아(어린이집)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시설을 건립(총 25개소 중 3개소어린이집으로 분리) 하였으며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조례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o 2010년도부터 총 22개소의 복지회관 중 15개소의 복지회관이 시지원(6개소/9,000만원, 9개소/3,500만원)을 받으면서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7개소의 복지회관은 70~80%를 어린이집과 경로당으로 사용, 복지사업 공간이 없어서 어린이집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표1> 다목적복지회관 예산지원 내용(2011년)

구분	예산지원 복지회관		
TE	6개소	9개소	비고
개소당(연)	9,000만원	3,500만원	총 8억5천5백만원
지원내용	복지사(3명) +운영비	복지사(1명) +운영비	

#### 4) 다목적복지회관 시설규모

합계	가형	나형	다형
	(606평 이상)	(303~606평)	(303평 이하)
22개소	1개소	7개소	14개소

※ 출처 : 성남시 내부자료

#### 2. 성남시 지역복지의 문제점

#### 1) 분당구와 구시가지간의 복지 불균형 문제

o 2009년 12월 현재 구시가지에는 총인구 50만명에 74%의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서, 분당구와 구시가지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수급권자> : 16,537명(분당구 4,269명, 중원구 5,860명, 수정구 6,408명)

#### 2) 성남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문제

o 성남시 총인구가 2015년 108만명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 함.

#### <2015년 성남시 총인구> 108만명 -> 사회복지관 11개소 필요

- 분당구 : 510,579명(현재 사회복지관 4개소 -> 5개소 필요)

- 중원구 : 292,709명(현재 시회복지관 1개소 -> 3개소 필요)

- 수정구 : 278,462명(현재 사회복지관 1개소 -> 3개소 필요)

#### <표2> 성남시 인구추이(2015~2020년)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성남시인구	1,032,812	1,081,749	1,108,857
필요 사회복지관	10	11	11

※ 출처 : 성남시청(2009), 『성남비전 2020 장기계획 최종보고서』

#### <표3>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구분	인구수	사회복지관수	개소당 인구비율
전 국	48,746,693	418	116,618명
서울시	10,228,160	95	107,664명
 부천시	884,976	10	88,497명
성남시	979,035	6	163,1 <b>72</b> 명

* 출처 : 통계청(2009), 전국/서울/성남/부천 인구(2009. 12)

-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0),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2010. 6)

- 준공계획 : 도촌사회복지관(2012. 9), 판교사회복지관(2012. 7)

#### 3. 복지회관 기능전환과 주민센터 활용 사회복지관 확충(안)

- o 2015년 인구 증가에 따라 인구대비 분당구와 구시가지간에 복지시설 균형 배치
- o 중원구의 경우, 현재 1개소(성남복지관)의 복지관이 있고, 1개소(도촌복지관)는 신축계획이 있으므로, 부족한 복지관 1개소는 복지회관 중 가장 규모가큰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743평)의 기능 전환을 통하여 확충.
- o 수정구의 경우, 현재 1개소(산성복지관/472평)의 복지관이 있고, 2개소의 복

지관이 필요하므로, 수정구에 소재하는 신흥1동복지회관(400평)과 태평3동주민센터(1,623평)를 활용하여 확충.

- o 신흥1동복지회관의 경우, 신흥3동주민센터(1,820평)와 연계운영을 통하여 주 민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도모
  - -> 부천시의 경우, 동 주민센터 내에 복지회관을 복합 설치하여 운영 중.
- o 분당구의 경우, 현재 4개소가 있고, 1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므로 부족 한 사회복지관을 신축(2012. 7 판교복지관 준공)하지 말고 판교동주민센터 (902평)를 활용함으로써 신축으로 인한 비용 절감
- o 복지회관과 주민센터를 활용할 경우 신축비용 절감효과(392억원)
  - 판교사회복지관(238억원) : 신축비용
  - 주민센터 활용시(50억원) : 태평3동(1,623평)중 복지관(500평) 사용
  - 복지회관 활용시(114억원) : 상대원2-2(743평), 신흥1동복지회관(400평)

#### <표4> 2015년까지 필요한 사회복지관 확충(안)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합계
총인구(2015년)	278,461	292,709	510,579	1,081,749
<u></u> 현 재	1	1	4	6
 신 축	-	1(도촌)	-	1
복지회관 기능전환	1(신흥1동)	1(상대원2-2)	-	2
주민센터 활용	1(태평3동)		1(판교동)	2
합계	3	3	5	11

#### □ 기능전환 대상 복지회관

#### <중위구>

# 상대원2동제2복지회관 o 소제지 : 중원구 상대원2동 o 연면적 : 743평(지하1~지상4층) o 시 설 - 지층 : 주차장, 복지목욕탕 - 1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 2 층 :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사무실 - 3 층 : 강당, 옥외 놀이터 o 설립일 : 2001년 12월 30일 o 증 축 : 2011년 증축(200평)

## <수정구>



#### □ 신흥1동복지회관 연계운영 주민센터

신흥3동주민센터	시설현황
	o 소제지 : 수정구 신흥3동 2819 o 건축비 : 73억7천100만원 o 대 지 : 750평 o 연면적 : 1,820평(지하 2층, 지상 4층) -지1~2 : 주차장/기계실 - 1 층 : 동사무소/상담실 - 2 층 : 동대본부/강의실(1~3)/회의실 - 3 층 : 헬스장/에어로빅/탈의실 - 4 층 : 대강당

#### □ 복합사용 대상 주민센터(사회복지관+주민센터)

#### <수정구>

#### 태평3동주민센터



#### 시설현황

o 소제지 : 수정구 태평3동 3752-1

o 건축비: 73억8천만원

o 대 지:657평

o **연면적 : 1,623평**(지하 2층 지상 4층)

o 준공일 : 2008년 10월

o 시 설: 민원실/문화교실/컴퓨터실

어학실/작은도서관/취미교실 헬스장/웰빙교실/다목적실

#### <분당구> 판교종합사회복지관 -> 판교동주민센터 활용

#### 판교동주민센터



#### 시설현황

o 소제지 : 분당구 판교동 575 (2009. 9)

o 건축비 : 51억4천8백만원

o 연면적: 902평(지하 1층, 지상 3층)

- 1 층 : 종합민원실

- 2 층 : 웰빙교실/주민회의실/헬스장/

취미교실(1)

- 3 층 : 취미교실(2)/다목적실/동대본부

- 지층 : 주차장/기계실

# Ⅱ.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실시

- o 동 단위로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어 대상자와 사업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복지회관을 대상별/사업별로 특화하여 지역 내 특정대상에 대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 방지
- o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체감 만족도 고취

#### 1. 현 황

- o 중원구의 경우, 상대원1~3동에 4개소의 복지회관이, 은행1~2동에는 4개소의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수정구의 경우, 태평2~4동에 3개소의 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 o 따라서 2012년도에 시범적으로 중원구와 수정구에 대동제(2~3개동을 1개 단위로 관리)를 단위로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사업을 분리하여 복지회관별 특성화/전문화사업 실시
- o <u>수정구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므로</u> 수정구에 소제하는 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전개

#### 2. 구별 시범사업 시행기관

o 중원구 : 상대원1~3동(인구 68,678명) -> 상대원1/2-2/3동복지회관

o 수정구 : 태 평1~4동(인구 77,508명) -> 태평2/3/4동주민센터

구분	동별 <i>[</i> 복지회관
중원구	o <u>상대원1~3동(68,678명)</u> : <u>상대원1/2-2/3동복지회관</u> o 은행2동(31,912명): 은행2동제2 o 금광1~2/은행1(70,884명): 은행1동 o 중동/도촌(33,720명) 중동제2 o 성남동(32,884명): 성남동 o 하대원(23,826명): 하대원동
수정구	o <u>태평동1~4동(77,508명): 태평2/3/4동복지회관</u> o 신흥동1~3동(63,281명): 신흥1동 o 수진동1~2동(42,000명): 수진1동 o 단대/산성/양지(42,447명): 산성동 o 고등/복정(17,530명): 고등동

#### 3. 대상별/사업별 특성화사업(예시) -> 보건복지부 안내자료

구분	핵심사업
	<노인대상 특성화사업>1. 대상 : 60세 이상 노인2. 핵심사업 : 노인대학/이동노인대학/긴급사례관리 등
대상별	<장애인 대상 특성화사업> <ol> <li>대 상: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li> <li>핵심사업: 토요장애학교/사회통합서비스 지원 등</li> </ol>
특성화사업	<대상별 특성화 핵심내용> 1. 노인/장애인 특화 서비스 제공 2. 기능중복 예방을 위한 유간기관간 기능 조정안 마련 3. Any-stop 서비스 시도 : 노인이 다른 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노인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사업기관으로 연결 4.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별 특성화사업	1. 사업기관 : 복지관이 집중된 지역의 3개 기관 2. 대 상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 3. 핵심사업 : 긴급관리서비스, 빨래방, 이동목욕서비스 실시 (3개의 기관에서 1개의 집중된 서비스 실시) 4. 핵심내용

※ 출처 : 보건복지부(사회복지관 특성화-다기능화 안내자료)

#### 4. 다문화사업 대상별 특성화사업(예시)

#### 1) 현황

- o 성남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중원구와 수정구에 각 1개소씩 다문 화 특성화사업 기관 선정
- o 중원구의 경우, 총 3,811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상대원1동복지 회관을 다문화 특성화사업 기관으로 선정, 중원구 거주 외국인을 대상(거주 인원의 73%, 2,800명)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 o 수정구의 경우, 총 9,016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신흥1동복지회관

을 다문화 특성화사업 기관으로 선정, 수정구 거주 외국인을 대상(거주인원의 82%, 7,368명)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구분	복지회관	인원(명)	인구수	
	성남동(73	성남동(730명), 상대원1동(646명)		
중원구	중원구 상대원1동 2,800		중동(578명), 금광1동(460명)	
			금광2동(386명)	
			수진1동(2,626명), 수진2동(1,264명)	
수정구	신흥1동	7,368	신흥1동(1,210명), 태평1동(1,617명)	
			복정동(651명)	

#### 2) 다문화사업을 위한 예산 : 연 1억6천만원

o 중원구 : 8,000만원(사회복지사 2명+운영비) o 수정구 : 8,000만원(사회복지사 2명+운영비)

<표1> 성남시 외국인 등록 현황

수정구	합계	중원구	합계
수진1동	2,626	성남동	730
태평1동	1,617	상대원1동	646
수진2동	1,264	중동	578
신흥1동	1,210	금광1동	460
복정동	651	금광2동	386
태평3동	320	상대원2동	324
신흥3동	309	상대원3동	213
산성동	235	은행2동	190
태평2동	212	하대원동	168
신흥2동	162	은행1동	61
태평4동	114	도촌동	55
양지동	98		
단대동	78		
시흥동	53		
고등동	49		
신촌동	18		
합계	9,016		3,811

※ 출처 : 성남시청(2010. 12)

# Ⅲ.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실시(수정구)

o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구에 부족한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실시함으로써, 지역별 장애인복지서비스 균등 제공

#### 1. 현 황

- o 성남시에는 총 35,06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분당구에 12,362명, 중원구에 11,946명, 수정구에 10,759명이 거주하고 있음.
- o 장애인복지관은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당구(한마음복지관)와 중원 구(성남장애인복지관)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고, 수정구에는 설치되지 않은 상태 임
- o 또한, 장애인 인구가 2010년 6.48%에서 2015년 9.5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 망(2006 차별시정위원회)하고 있어, 늘어나는 장애인 인구에 따른 구별 균형 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2. 장애인복지사업 실시기관

o 장애인의 접근성과 다목적복지회관의 지역안배를 통하여 선정 <1안> 복지회관 1개소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실시(사회복지사 3명 배치) <2안> 복지회관 3개소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실시(기관별 1명씩 배치)

#### 3.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

<1안> 복지회관 1개소 : 1억2천만원(복지사 3명 인건비+운영비)

<2안> 복지회관 3개소 : 1억2천만원(3개소x4,000만원), 복지사1명+운영비

<표1> 성남시 장애인 인구 및 장애인복지관 현황

구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합계
장애인구	10,759	11,946	12,362	35,067
· 현 재	-	1(성남)	1(한마음)	2
합계	-	1	1	2

<표2> 향후 장애인구 전망(2015년까지)

연도	총인구대비(%)	추정장애인	등록장애인
2005	4.59	2,148,686	1,699,329
2010	6.48	3,189,092	3,013,704
2015	9.52	4,739,206	4,639,683

※ 출처 : 차별시정위원회(2006)

# Ⅳ.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연계 운영

- o 주민의 접근성이 높고,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중 심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주민복지 기능 강화
- o 주민센터를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1. 현황

- o 현재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총 27개동에 주민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공실 률이 높은 상태임.(산성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현황 참조)
- o 그에 반해 중원구와 수정구에는 15개소(지역복지 예산을 받는곳)의 다목적 복지회관(160평~550평)이 있으나, 공간부족으로 지역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상태임
- o 따라서, 중원구와 수정구에 있는 27개동 주민센터 중, 500~1800평 규모의 주민센터를 다목적복지회관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부족한 복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복지 활성화 도모.

#### 2.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연계운영(안)

o 시로부터 복지사업 예산지원을 받는 복지회관 15개소 중 7개소의 복지회관 과, 중원/수정구에 소제하는 27개 주민센터 중 500-1,800평 규모의 주민센터 를 복지회관과 연계운영

#### <표1> 연계운영 주민센터+복지회관

구분	중원구	수정구	합계
주민센터	11	16	27
복지회관	8	7	15
주민센터 연계운영	4	3	7

#### <표2> 연계운영 복지회관

구분	주민센터	연면적(평)	연계 운영기관
	산성동	1,643	산성동복지회관
수정구 (3개소)	신흥3동	1,820	신흥1동복지회관
, ,	태평1동	1,020	태평2동복지회관
중원구 (4개소)	금광2동	818	은행1동복지회관
	상대원1동	503	상대원1동복지회관
	상대원3동	673	상대원3동복지회관
	도촌동	902	중동제2복지회관

#### 3. 연계운영을 위한 예산 : 연 2억8천만원(7개소x4,000만원)

o 중원구 : 1억6천만원(4개소x4,000만원) o 수정구 : 1억2천만원(3개소x4,000만원)

#### 4. 부천시 사례

## 1) 주민센터내에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부천시는 소사구(인구 22만명 -> 1개소)와 오정구(19만명 -> 1개소)에 부족한 사회복지관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로 신축하는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총 4개소(소사구 2개소 / 오정구 2개소)의 복지회관을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시설장, 직원)와 운영비를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를 통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규모별로 연 2억5천만원 ~ 7억지원)

<표3> 부천시 복지회관 현황 : ※ ( )는 위탁시설 평수임

구분	기관명	위탁평수	시설
오 정 구	고강복지회관 (주민센터 내)	1,391 ( <b>1,088</b> )	o 지1층: 헬스장, 에어로빅실, 관리실 o 1 층: 동사무소, 다목적회의실, 중대본부     물리치료실 o 2 층: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o 3 층: 사무실, 컴퓨터실, 음악교실, 강의실(1~4) o 4 층: 경로식당, 전통교실, 아동발달가족센터     관장실, 회의실 o 5 층: 강당, 노인공동작업장
	삼정복지회관	1,282	독립건물

	소사복지회관	406	주민센터 내 설치
소 사 구	심곡복지회관 (주민센터 내)	611 <b>(306)</b>	o 지1층 : 주차장, 기계실 o 1 층 : 동사무소, 중대본부 o 2 층 : 옹기종기교실, 식당, 체력단련실 o 3 층 : 관장실, 사무실, 아동발달가족센터,

#### 2) 복지회관과 주민센터의 협력관계 사례

o 부천시는 이미 몇몇 민간 복지기관이 주민센터 내로 들어가 각종 복지사업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u>주민센터는 공간의 일부를</u> 민간 복지기관에 제공하고, 민간 복지기관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기 힘든 각종 복지·문화·체육·교양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

o 이는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민센터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고, 민간 복지기관의 경우 사업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표4> 주민센터와 복지기관의 협력관계

주민센터	민간 복지기관
o 민간 복지기관에 공간 일부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교양 프로그램을 위임 o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o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관심 증대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가능 o 민간 복지기관의 자체 예산 집행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 예산 및인건비 절감 효과	<ul> <li>○ 부족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해소</li> <li>○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운영</li> <li>○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li> <li>○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 및 홍보 활동</li> <li>○ 주민센터 내에 위치함에 따라 지역주 민과의 거리감 축소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 효과</li> <li>○ 즉각적인 행정처리 가능</li> </ul>

# 복지회관+주민센터 연계운영(안)

#### <중원구>

상대원1동복지회관(462평)



상대원1동주민센터(503평)



상대원3동복지회관(304평)



상대원3동주민센터(673평)



은행1동주민센터(220평)



금광2동주민센터(818평)



#### <중원구>





#### <수정구>





태평2동복지회관(240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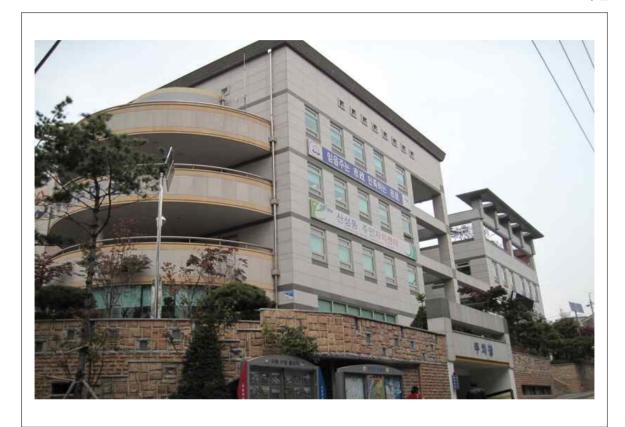




#### <첨부자료>

# 산성동 주민센터 운영현황(예시)

<2010. 7. 30 기준>



1. 위 치 :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36

2. 준 공 일 : 2007. 4

3. 공 사 비 : 총 68억

4. 연 면 적 : 5,421 m² (1,643 평), (지하2층~지상4층)

5. 시설현황 : 교육실(5), 세미나실, 다목적실, 대강당, 도서실, 헬스장

<1층> 민원실, 동대본부

<2층> 세미나실, 작은도서실, e편한사랑방(1), 컴퓨터실, 사임당방(2)

<3층> 헬스장, 다목적실, 사회교육실(3~5)

<4층> 컨벤션홀, 산성마루

<지층> 주차장, 기계실

# 1. 주민센터 시설현황

충	시설현황					
지	지하주차장					
	민원실			산성 갤러리		
1	PER SEC.			AN SHA		
	산성사랑방	책과의	만남	e-편한 사랑방		
2	세미나실	컴퓨터	H교실	사임당방(교육실)		

충	시설현황				
	헬스장			다이나믹볼륨	
3	세종방(교육실) 정약용병		(교육실) 장영실방(교육실)		
	컨벤션홀			산성마루	
4					

# 2.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2010. 7. 30 기준>

번호	프로그램명	정원	대상	교육시간
1	중국어	20	일반	매주 화, 목 13:30~14:30
2	요가(A)	30	일반	매주 월, 수 18:00:~19:00
3	요가(B)	30	일반	매주 월, 목 12:20~13:20
4	영어	20	일반	매주 월, 수 11:00~12:00
5	에어로빅	30	일반	매주 월~금, 11:00~12:00
6	어린이댄스스포츠	30	초등학생	매주 화, 목 17:00~18:00
7	암기력(주산교실) A	15	초등학생	매주 월, 수 15:30~16:30
8	암기력(주산교실) B	15	아동	매주 월, 수 16:30~17:30
9	실버건강댄스	30	일반	매주 화,목,금 15:30~17:30
10	스포츠댄스	30	일반	매주 월,수,금 9:30~10:30
11	헬스 1부	30	일반	매주 월~금 9:00~1:30
12	헬스 2부	30	일반	매주 월~금 11:30~14:00
13	헬스 3부	30	일반	매주 월~금 14:00~16:30
14	헬스 4부	30	일반	매주 월~금 16:30~17:30
15	탁구	20	일반	매주 월,수,금 15:30~17:30
16	키즈밸리댄스	20	7세~초등학생	매주 월, 수 16:00~17:00
17	컴퓨터교실(초급)	20	일반	매주 화, 목 10:00~11:00
18	컴퓨터교실(중급)	20	일반	메주 월, 수 10:00~11:00
19	서예교실	15	일반	매주 화, 목 10:00~11:00
20	밸리댄스	30	일반	매주 화, 목 9:30~10:30
				매주 금 12:30~13:30
21	방과 후 교실(초등영어)	20	초6~중1	매주 화, 목 17:30~19:30
22	방과 후 교실(초등수학)	20	초6~중1	매주 화, 목 17:30~19:30
23	방과 후 교실(중등영어)	20	중2~중3	매주 월, 금 17:30~19:30
24	방과 후 교실(중등수학)	20	중2~중3	매주 월, 수 17:30~19:30
25	방과 후 교실(중등국어)	20	중2~중3	매주 수, 금 17:30~19:30
26	바둑교실	20	초등학생	매주 화, 금 17:00~18:00
27	노래교실	30	일반	매주 목 14:00~15:00
28	게이트볼(동아리)	20	일반	매주 월,수,금 13:00~

# 3. 프로그램실 운영현황

## 1) e 편한 사랑방(2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탁구교실		탁구교실		탁구교실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 2) 컴퓨터 교실(2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컴퓨터교실 중급	컴퓨터교실 초급	컴퓨터교실 중급	컴퓨터교실 초급	
11:00~12:00	0 Н	<u> </u>	0 日	<u> </u>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 3) 사임당방(2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서예		서예	
11:00~12:00	영어		영어		
12:00~13:00					
13:00~14:00					
14:00~15:00		중국어		중국어	
15:00~16:00	신문지공예			신문지공예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 4) 다이나믹 볼륨(3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03.00 10.00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스포츠댄스
10:00~11:00					
11:00~12:00	에어로빅	에어로빅	에어로빅	에어로빅	에어로빅
12:00~13:00					
	요가 A			요가A	밸리댄스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 1500	키즈	실버댄스	키즈	실버댄스	실버댄스
16:00~17:00	밸리댄스		밸리댄스		
17.00 10.00		어린이		어린이	
17:00~18:00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	
18:00~19:00			요가B		요가 B
19:00~20:00					
20:00~21:00					

# 5) 세종대왕실(3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중등수학	초등수학	중등국어 중등수학	초등수학	중등국어
19:00~20:00					
20:00~21:00					

# 6) 정약용실(3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중등영어	초등영어		초등영어	중등영어
19:00~20:00					
20:00~21:00					

# 7) 장영실실(3층)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주산교실		주산교실		
17:00~18:00		바둑교실			바둑교실
18:00~19:00					
19:00~20:00					
20:00~21:00					

# 8) 4층 컨벤션홀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14:00~15:00				노래교실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19:00~20:00					
20:00~21:00					

# V. 복지사업비 미지원 기관 어린이집 분리

o 복지시설의 80% 이상을 어린이집과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시로부터 복지 사업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복지회관은 어린이집으로 분리

#### 1. 현 황

- o 총 22개소의 복지회관 중 15개소의 복지회관이 실사를 통하여 2010년 도부 터 복지회관별로 복지사업비 예산을 3,500만원(9개소)~9,000만원(6개소)까지 차등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7개소는 복지공간의 부족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o 따라서, 공간부족으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어린이집으로 분리 필요.
  - 전체 22개소 중 해당시설(7개소) 어린이집으로 분리
  - 분리기준 : 복지사업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는 시설
  - 금광2-2/단대동/중동제1복지회관 -> 어린이집으로 분리 됨

#### 2. 해당시설: 7개소

o 중원구(5개소) : 금광1/금광1-2/상대원2-1/은행2-1/은행2-3

o 수정구(2개소): 양지동1/양지동2

<표1> 어린이집으로 분리해야할 복지회관 현황(7개소)

	건평	_{그 떠} 충별 배치도		배치도	
시설명	신청	지충	1충	2충	3층
금광1동	282	체육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금광2-1	273	체육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상대원2-1	185	체육실	어린이집	경로당	어린이집
은행2-1	240	체육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사무실
은행2-3	178	체육실	경로당 방과후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양지동1	198	체육실/문고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집
양지지동2	167	마을문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

#### <첨부자료>

# 어린이집 분리 복지회관(7개소)

## 금광1동 시설현황 o 건평: 282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5. 11. 14 금광2동제1 시설현황 o 건평 : 273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o 설립연도: 1991. 12. 20 상대원2동제1 시설현황 o 건평: 185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3, 12, 21 은행2동제1 시설현황 o 건평 : 240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컴퓨터실

o 설립연도: 1993. 12. 20

# 어린이집 분리 복지회관

#### 은행2동제3

#### 시설현황



o 건평 : 178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청소년공부방

o 설립연도: 1996. 3. 2

#### 양지동제1

#### 시설현황



o 건평 : 232평

o 지층 : 어린이집. 마을문고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 1992. 7. 21

#### 양지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167평

o 지층 : 어린이집, 마을문고 o 1 층 : 어린이집, 노인정

o 2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7. 10. 1

## <결 론>

#### 1.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활용 사회복지시설 확충

#### 1) 사회복지 시설확충(4개소)

- 복지회관 기능전환(2개소) : 중원구(상대원2동제2), 수정구(신흥1동)

- 주민센터 복합사용(2개소): 수정구(태평3동), 분당구(판교동)

#### 2) 예산절감 : 392억원

-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용 절감(238억원)

- 주민센터 활용 예산절감(50억원) : 태평3동(1,623평)중 500평 사용

- 복지회관 활용(114억원) : 상대원2-2(743평), 신흥1동복지회관(400평)

## 2.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 실시

1) 다문화사업 : 중원구(상대원1동복지회관), 수정구(신흥1동복지회관)

2) 기타 사업: 지역특성 및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통한 사업

#### 3. 복지회관과 주민센터 연계운영

1) 수정구(3개소) : 산성동/신흥동/태평동

2) 중원구(4개소) : 금광동/상대원1/3동/도촌동

구분	주민센터	연면적(평)	연계 운영기관
21	산성동	1,643	산성동복지회관
수정구 (3개소)	신흥3동	1,820	신흥1동복지회관
(0,11-1)	태평1동	1,020	태평2동복지회관
	금광2동	818	은행1동복지회관
중원구	상대원1동	503	상대원1동복지회관
(4개소)	상대원3동	673	상대원3동복지회관
	도촌동	902	중동제2복지회관

#### 4. 장애인복지사업 실시(수정구)

- o 수정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으므로 복지회관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 o 장애인의 접근성과 다목적복지회관의 지역안배를 고려 1개소 또는 3개소의 복지회관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실시
- o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 1억2천만원(복지사 3명+사업비)

## 5. 복지사업 미지원 기관 어린이집으로 분리

1) 분리기준 : 복지사업 예산 미지원 복지회관

2) 대상기관 : 7개소

- 중원구(5개소) : 금광1/금광1-2/상대원2-1/은행2-1/은행2-3

수정구(2개소) : 양지동1/양지동2

## 6.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활용(안) : 연 12억8천만원

구분	개소	해당 복지회관	연예산(만원)
사회복지관 기능전환	2	o 중원구(상대원2동제2복지회관) o 수정구(신흥1동복지회관)	72,000
특성화사업	6	o 중원구(상대원1/2-2/3) o 수정구(태평2/3/4)	~
다문화사업	2	o 중원구(상대원1동복지회관) o 수정구(신흥1동복지회관)	16,000
장애인 복지사업	1~3	o 수정구 소제 복지회관	12.000
복지회관 주민센터 연계	7	o 중원구(상대원1/2-2/3/중동2/은행1) o 수정구(태평2/신흥1/산성동)	28.000
어린이집 분리	7	o 중원구(금광1/금광1-2/상대원2-1/은 행2-1/은행2-3) o 수정구(양지1/양지2)	-

## 7. 성남시 주민센터 활용(안)

구분	주민센터	연면적 (평)	연계기관
	신흥3동	1,820	신흥1동복지회관 연계운영 (사회복지관 복합사용)
수정구	산성동	1,643	산성동복지회관 연계운영
(4개소)	태평1동	1,020	태평2동복지회관 연계운영
	태평3동	1,623	사회복지관 복합사용
	금광2동	818	은행1동복지회관 연계운영
중원구	상대원1동	503	상대원1동복지회관 연계운영
(4개소)	상대원3동	673	상대원3동복지회관 연계운영
	도촌동	902	중동제2복지회관 연계운영
분당구	판교동	902	판교사회복지관 복합사용

# <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2010),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2009. 12)
- 성남시(2009), "성남비전 2020 장기계획 최종보고서" 성남시
- 성남시청(2010), 시정주요 통계수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 통계청(2010), 전국인구현황
- 경기도(2010), 2009년 경기통계
- 성남시청(2010), "200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 차별시정위원회(2006), 향후 장애인구 전망(2015년까지)
- 보건복지부(2006),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 <백팔간지>

□ 토론 1.

임 원 균 (고양시 원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임 원 균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시의 복지욕구에 대한 많은 정보가 없이 토론에 임한다는 것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제발표 내용과 본 토론자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중심의 경험으로 한정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토론자가 보는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방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복지관 미설치지역의 시민수요와 인구밀집정도를 고려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복지회관을 기능 전환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복지관의 건설보다는 기존에 건립운영중인주민센터를 복지관기능을 부여하여 복합사용하는 것, 셋째, 이러한 복지회관과 주민센터가 지역적이고 인구사회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화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 본 활성화방안에서 주요 이슈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적 복지시설의 편중해소는 새로운 복지시설의 건립과 설치운영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하는 것이나 토론자가 성남시의 재정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점,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전환과 주민센터의 복합운영 관점도 기존의 복지시설과의 기능적중첩, 지리적 중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기에 토론자가 성남시의 지역적, 인구사회적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찬반의 의견을 정확히 내세우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간 복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의 방향이 아닌, 지역사회 내 산재해있는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으로의 접근과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부족한 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가 형성 되는것에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우선 찬성을 한다.

본 토론자가 우선 이 활성화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은 토론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거점센터'운영 사례가 비록 내용과 형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논의와 유사한 필요점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2011년기준 9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성남시 2010년 총인구 1백만명의 인구규모와 유사하다. 행정구역도 성남시가 중원·수정·분당구 3개구(區)로 구분되어있듯이, 고양시도 덕양·일산동·일산서구 3구(區)로 구분되어있다. 고양시는 3개구(區) 39개의 행정동으로 구분되어있다. 각 구(區)의 인구수는 덕양구 39만명, 일산동구 28만명, 일산서구 27만명이며, 일산동구와 서구는 과거의 인구거주지역도 물론존재하나 대부분의 지역이 신도시개발지역으로 형성되어있다.

고양시는 농업지역과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해있는 개발제한지역이 비교적 폭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이 덕양구에 많이 집중되어있다.

많은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출발점이 그러하듯 과밀 수도권지역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기에 신도시지역에 교육과 문화, 교통, 편의시설, 행정기관이 집중되며, 신도시지역과 구도시지역과의 사회기반시설이나 문화, 복지, 교통, 편의시 설에서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사회복지관은 일산구에 4개 기관, 덕양구에 1개 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어 단순 인구대비로만 비교하여도 일산구(동구, 서구)는 인 구 약 10만명당 1개의 사회복지관, 덕양구는 인구 약 40만명당 1개의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리적 특성에서 덕양구 지역만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본다면, 성남시는 신 도시지역과 구도시지역이라는 개발적 특성으로 구분되나 고양시의 경우는 덕양구는 시청소재지인 행정중심지역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면 전형적인 농촌 또는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해당지역의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본 토론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접근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이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하여 일정한 성과를 보았지만, 순회적인 서비스로는 이용자의 필요와 지역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결국 지역주민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 고양시 최초의 지역상주형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작은 복지관 설치운영을 '거점센터'로 명명하였다.

거점센터를 운영하기위한 고려는 첫째, 해당지역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함으로 초기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부담을 적게하는 것과 둘째, 운영 프로그램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지역의 필요에 의해 구성할 것 셋째, 서비스제공을 위한 양질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투입을 확보하는 것 넷째, 거점센터는 지역적 환경변화(예를 들어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대단위 복지시설의 건립시, 교통환경의 개선 등)가 있을 때 중단될 수 있다는 가변적 운영방안 등이었다.

성남시의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방안에서 기존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재정적 투입의 부담완화와 좀 더 밀집되고 근접한 거리에서의 복지서비스이용가능성, 노인 및 장애인인구의 증가가 예측되는 인구동향에 따른 검토는 본 토론자가 예시한 '거점센터'의 설치운영과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이 지역적 복지인프라의 촘촘한 구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일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접근가능하고 매우 현실성 있는 주장임과 동시에 재정적인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분명 매력이 있는 방안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토론자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다.

# 지역별 복지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밀도 있는 지역탐색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탐색이 지리적, 인구수의 요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역사회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과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지역특성이라는 것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포함되나, 이러한 복지회관이 기능 전환되고 주민센터가 복합 사용될 때 실제적인 이를 이용하는 주된 주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나 일선현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일반시민이 느끼는 복지라는 것은 그 대상과 내용에 차이점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공연이나좋은 휴게 공간, 체육시설 등을 복지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관점인 저소득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내 보호를 복지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에 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형상화 할 것인 가를 고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거론된 지역의 주민욕구조사나 기능전환 대상 복지회관의 특성을 규정하는 일련의 논의가 이어져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다.

#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실시와 기능전환하거나 복합운영에 따른 재정소요를 좀 더 현실성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활성화방안에서 장애인복지사업과 다문화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 토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좋은 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과 기능전환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특화되거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은 사회적기대감을 가지게 됨으로, 이를 위한 이용 가능한 서 비스를 마련하고,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 하는 것도 시설에 대한 적합한 변형도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인력 2명, 3명의 구조가 아닌 어찌보면 해당 시설의 전체를 특성화사업을 위해 배치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구성이나 편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인력배치가 모든 특성화사업의 해결점이 되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일수도 있기에 재정소요계획을 좀 더 현실성 있도록 검토하거나, 이미 성남시내에서의장애인복지사업과 다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역할정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성남시민과 복지현장의 실천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 발전되기를 기대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백팔간지>

□ 토론 2.

**최 영 일** (정남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

# ※ 별도까료 참꼬

# <백팔간지>

□ 토론3.

**최 종 복** (부천시 준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최종복

(부천시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

#### 1. 들어가며

우선 금일 실시되는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그 자체로 성남시의 복지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논의들이 지속되는 구조 안에서 발전적인 미래상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는 믿음과 신뢰가 성남시민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실로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의 활동과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발전을 기원한다.

#### 2. 성남시 지역적 특성

지역사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적 방향을 수립하는 핵심 요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에 제2기 성남시 지역사회복지계획과 본 주제발표문을 통해 살펴본 성남시 지역사회 특수성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사회복지 시설 불균형과 지역 재정 형편의 차이 둘째,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성남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셋째, 노인과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

넷째, 다목적복지회관 22개소가 수정구와 중원구의 구도심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다섯째, 노인인구의 수는 분당구가 가장 많으나 노인인구 비율은 수정구가 가장높음 여섯째,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현상

일곱째, 지역별 수급자 수는 수정구가 가장 많으며 그다음으로 중원구, 분당구 순여덟째, 성남시민이 느끼는 지역문제로는 신구시가지 격차와 빈부격차가 가장 심각

#### 3. 성남시만의 다목적복지회관이 가지는 강점

우선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가 가지지 못한 우수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한 다목적복지회관이 22개소가 있으며 이는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구도심권에 집중 배치되어 이를 활용함으로써 구도심권 저소득 주민의 복지서비스 확충과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전문 영역으로의 연계성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다목적복지회 관에 대한 보조지원을 시작하였고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간적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문 인력의 확 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과의 유 기적인 연계성이 이를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가져 발전적인 시너지 효 과를 예측하게 한다.

셋째로는 특성화 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목적복지회관의 특성이다 다르다는 점에서 이는 모두가 동일한 운영방식과 사업을 가져야 한다고 보지않는다. 즉 시설이 가지는 규모와 지역적 특성(인근지역에 사회복지관이 위치하는지 여부, 주변에 주된 대상층이 누구인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지리적인 특성에서 발전시킬 미래지향점은 무엇인지 등 검토)을 고르게 파악하여사회복지시설을 구분 정리하고 이로써 사업적 특성화 전략이 함께 도모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로는 다기능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다기능화 추진에 있어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동서로 확연히 구분되는 현실 - 즉 동쪽으로 주민들이 집중 거주하면서 동쪽으로의 발전이 활발한데 반해 서쪽으로는 녹지 중심의 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 거주가 적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을 다기능화 사업을 통한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으리라는 상상이 그것이다. 현재 수정구 서쪽과 분당구 서쪽의 녹지 지역에는 거주인구가 극히 적지만 고등동, 신촌동, 시흥동, 운중동, 판교동 등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농촌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또는 다기능화 사업을 추진할 인근 다목적복지회관(고등동, 태평동 등)과 대규모동 주민센터(판교동)의 기능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4.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장창현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의 주제발표문에서 나타나는 성남시 다목적복지 회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단지 다목적복지회관만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방안 이 아니라 성남시 전역의 복지적 접근성 증대와 비용 절감, 기존 인프라 시설의 적절한 안배와 시설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특성화를 통한 기관의 정체성 확립, 사 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기하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이라는 점에 서 귀중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성남 관내의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생활하면서 이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천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의 발전 방안 연구는 좀 더 현실적이며 실현가능

하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토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주제발표문은 성남시 주민으로서 성남 복지발전을 위해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성남시는 중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본 주제발표 제안사항들을 적극적, 발전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협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기의 사항들을 전제로 하면서 본 토론자는 몇 가지 측면에서 성남시가 고민의 영역을 확대해 보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토론문에 대신하고자한다.

#### 1) 다목적복지회관의 역할 전환과 조례 개정, 지역복지 활성화

주제발표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증설과 함께 다목적복지회관의 주민센터 연계, 특성화 사업 추진기관으로의 기능전환 등을 병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사회복지관은 무엇이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내부적인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성남시는 사회복지관이 6개소가 있으며 다목적복지회관이 22개소가 있다. 이를 2015년까지 11개소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방안으로 중원구의 상대원2다목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전환하며, 수정구의 신흥1동다목적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고자 한다. 그 외에는 1개의 중원구 신설과 함께 2개의 동 주민센터 일부 공간을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관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관, 다목적복지회관, 동 주민센터의 시설적 용도와 기능의 구분이 전재되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 주민센터는 동지역주민의 생활전반의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전달체계이며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이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지방자치법 제 135조에 의거 노인과 유아를 위한 이용시설로 건립하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다목적복지회관이 경로당, 어린이집으로 시작하였으나 최근 지역복지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지역복지사업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고 역할 요구도 그러하다는 측면에서 보조금도 일부 지원하여 사업적 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의 실천단위는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복지의 실천 대상을 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지역사회 단 위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참여형의 로컬 거버넌스가 실현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조직, 지역사 회보호 등 지역복지 실천 전략을 강화하고 주민조직과 협력 그 과정에서의 임파 워먼트와 옹호 등 실천기술에 대한 훈련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 능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특정 계층의 보호, 상담, 치료의 개념보다는 계층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수의서비스 욕구 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전문적인 개입은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복지관의역할과 기능이 증대되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복지회관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시설로 명확히 역할과 기능에 대해 조례로 개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관과 동일한 행 재정적인 지원과 사업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대상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부족한 지역복지 현실을 개선하기위한 방안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사회복지관 운영의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적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구분과 역할 명료화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그 기준도 매우 높다. 대상별 영역도 확대되었고 보다 전문적인 사업실천과 사회복지서비스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을 요구하고 법적인 기반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의 변화는 당연한 시대적 요청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의 22개소 시설의 사업적근거와 역할은 어떠한지 명확히 구분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본을 명확히 정립하는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 특정 대상에 집중된 지역적 특성과 시설적 특성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 발 빠른 기능전환과 시설변경을 통해 업무의 명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발표문에서 제시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7개소를 어린이집으로의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3,500만 원 정도의 예산 보조를 받는 사회복지사 1인 배치의 9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양을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에 가깝고, 인력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의 3명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상황에 있어 사업 수행에 있어 원활한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고, 반면 지역아동센터의 3명 인력 구성에 부합되며 보조금은 그에 비해 3배가량 많은 6개소의 다목적복지회관은 또한 지역아동센터로 서의 역할만을 명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조지원과 역할제시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규모별로 303평 이상의 8개소 다목적복지회관(상대원2동2(가장 큰 743 평), 상대원1동, 상대원3동, 고등동, 산성동, 수진1동, 신흥1동, 하대원동)을 사회복

지관 기능의 시설로 정하고 그 외 300평 이하의 14개소 중 보조금 지원이 없는 소규모 7개소(금광1동, 금광2동1, 상대원2동1, 은행2동1, 은행2동3, 양지동1, 양지동 2)를 어린이집으로 분리하고 나머지 7개소(성남동2, 중동2, 은행1동, 은행2동2,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에 대해 특성화 전략을 통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떠할지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시설,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등으로 명확히 하여 보조지원의 안정성과 법적 기반을 통한 시설운영의 안정성 등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3)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전환 합의의 시간 : 구별 특성화 추진

주제발표문에서는 다양한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제시하였으며 그 방법에서도 매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그 중 특성화 추진에 대한 제안은 현재의 다목적복지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이를 통한 업무 운영의 발전과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며 계획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민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복지 실천노력이 당부되어 진다고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특성에 대한 분석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 단위에서도 중요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문제라고생각된다. 이는 결국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며 종합적이고 고른 사회복지서비스의제공을 위한 지리적 인구의 분포도를 감안한 지역적 형평성과 전문성 제공의 기초이기도 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상별 접근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때 다목적복지회관의 특성화 전략을 통한 기능전환 시설은 각 동별 인구수와 분포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수진1, 2동, 태평1동, 신흥1동의 외국인등록 현황은 수정구를 다문화 집약도시로 발전시키고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없는 수정구에 장애인 특성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수정구의 특성상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과 사회안전망,노인복지사업의 특성화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더불어 이러한 관점은 중원구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과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시설의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보다는 다른 영역의 시설 확충과 기능전환을 고려 - 중원구의 거주주민의 경우 사회적 보호서비스 대

상자 수가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과 청소년시설, 다문화지원시설 등 수정구와 비슷한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 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있다는 것이다. 이는 분당구는 청소년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 이는 학원 및 지역경제와 학력의 연관성으로 보여짐 - 우선적으로는 청소년 대상의 학교개입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강화하고, 또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고있어 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시설과 중산층 이상의 노인복지시설로의 서비스 변화등의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는 각 구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의 변화와 기능 전환을 다목적 복지 회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각 분과들이 한데 모여 종합적인 운영 계획과 기능전환을 합의하고 발전시키는 논의구조를 마련하고 다목적복지회관만의 고민이 아닌 타 시설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시설 운영의 영역을 넓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4) 서부권역의 사업적 확대와 서비스 접근성 개발

성남시의 서부권역은 녹지와 산림으로 이루어져 거주민의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인 거주민의 거주분포는 남북으로 길게 띠를 형성하는 모양이고 수정구 우측과 중원구 전역, 분당구의 우축부분으로 철도와 함께 도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변화와 접근의 방향은 거주주민의 분포도에 밀접되게 운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서부권역의 거주민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까지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서부권역의 접근을 수정구와 분당구로 볼 때 수정구의 고등동의 경우 다목적복지회관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서비스 권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분당구의 경우 판교동주민센터가 서부권역으로의 접근 중심지에 있어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두 기관을 활용하여 농촌형 복지서비스 제공 형태를 활용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이동상담 및 순회서비스 제공 등의 도심권 서비스와 차별화된접근을 시도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다기능화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 청소년, 아동 등의 복합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있도록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 5. 마무리하며

본 토론자는 주제 발표한 장창현 회장님의 주제 글에서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지리적 고른 배치, 각 동의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시설공유, 각 대상층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한 기존 시설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 시설 활용에서 오는 비용의 절감 대책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식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 깊 이 공감하며 동의한다. 이를 전제로 본인은 몇 가지 실천과정에서 함께 생각해보 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개인적인 소견을 토론의 글로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활성화되는 것은 민간기관과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파트너십과 참여,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민간영역에서의 역할이 존재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이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즉 어느 한쪽의 무게가 더 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영역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제시한 고귀한 의견을 존중하여 신중하게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로 발전시켜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들이 결국 성남시 사회복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에 오늘 이 자리의 논의 발표가 향후 더 진중하게 지역 안에서고민되고 합의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백팔간지>

□ 부록 □

# □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연합회 연황

### <중원구소재 복지회관>

#### 상대원1



#### 시설현황

o 건평 : 462평 o 지층 : 주차장

o 1 층 : 체육실. 안내데스크

o 2 층 : 주간보호센타. 아동지원센타.

빨래방, 사회교육실

o 3 층 : 경로식당

o 설립연도: 2003, 3, 31

#### 상대원2동제1



#### 시설현황

o 건평 : 185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3, 12, 21

#### 상대원2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 743평(200평 증축공사)

o 지층 : 주차장. 복지목욕탕

o 1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관장실

o 2 층 : 경로식당. 주간보호센터

복지사무실

o 3 층 : 강당. 옥외 놀이터

o 설립연도 : 2001. 12. 30

#### 상대원3동



#### 시설현황

o 건평: 304평

o 지층 : 중풍노인주간보호센타. 물리치료

실. 재가노인복지센타. 가정봉사

원훈련원. 물리치료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어린이집. 노인정

o 설립연도 : 1992, 2, 26

#### 성남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 119평

o 지층 : 푸드뱅크

o 1 층 : 사 무 실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방과후 학교

o 설립연도: 1991, 12, 13

### 중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 166평 o 지층 : 경로식당

o 1 층 : 경로당

o 2 층 : 사무실. 빨래방. 자원봉사자실

o 3 층 : 문해교실. 청소년공부방

o 설립연도: 1996, 3, 12

은행1동

### 시설현황



o 건평 : 220평

o 지층: 다목적실, 조리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사무실

o 4 상 : 방과후학교. 상담실. 노인복지

센터, 도서대출실

o 설립연도 : 1991, 11, 23

#### 은행2동제1

#### 시설현황



o 건평 : 240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컴퓨터실

o 설립연도 : 1993, 12, 20

#### 은행2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207평

o 지층 : 특별활동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사무실

o 4 층 : 지역아동센타

o 설립연도: 1991, 12, 21

# 은행2동제3

# 시설현황



o 건평 : 178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청소년공부방 o 설립연도 : 1996, 3, 2

#### 금광1동

# 시설현황



o 건평: 282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5, 11, 14

### 금광2동제1

#### 시설현황



o 건평: 273평

o 지층 : 체 육 실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어린이집. 방과후학교

o 설립연도 : 1991, 12, 20

### <수정구소재 복지회관>

# 시설현황 고등동 o 건평 : 353평 o 지층 : 경로식당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o 옥상 : 게이트볼장 o 설립연도: 2000, 3, 1 산성동 시설현황 o 건평 : 515평 o 지층 : 체 육 관 o 1 층 : 어린이집. 사무실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장애인작업장 o 4 층 : 사회교육실. 지역아동센터 o 설립연도: 1994, 10, 20 수진1동 시설혂황 o 건평: 403평 o 지층 : 사회교육실 o 1 층 : 경로식당. 노인정. 어린이집 o 2 층 : 어린이집. 사무실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4, 11, 10 신흥1동 시설현황 o 건평: 400평 o 지층 : 체육실 o 1 층 : 노인정. 어린이집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사회교육실. 지역아동센터 o 설립연도: 1992, 9, 15

#### 양지동제1

# 시설현황



o 건평 : 232평

o 지층 : 어린이집. 마을문고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2, 7, 21

# 양지동제2

# 시설현황



o 건평 : 167평

o 지층 : 어린이집. 마을문고

o 1 층 : 어린이집. 노인정

o 2 층 : 어린이집

o 설립연도: 1997, 10, 1

# 태평2동

# 시설현황



o 건평 : 240평

o 지층 : 다용실(체육실)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o 3 층 : 주간보호센터 o 설립연도 : 1991, 12, 10

### 태평3동

#### 시설현황



o 건평 : 277평

o 지층 : 경로식당

o 1 층 : 어린이집

o 2 층 : 노 인 정

o 3 층 : 사회교육실. 청소년공부방.

빨래방

o 설립연도 : 1993, 3, 11

### 태평4동

# 시설현황



o 건평 : 293평

o 지충 : 주차장

o 1 층 : 프로그램실(3)/사무실

o 2 층 : 노인정

o 3 층 : 대회의실/소회의실

o 설립연도 : 2011, 4, 1

# 하대원

# 시설현황



o 건평 : 367평

o 지층 : 경로식당

o 1 층 : 노 인 정

o 2 층 : 어린이집

o 3 층 : 어린이집

o 옥상 : 생태학습공간

o 설립연도 : 2000, 11, 9

# □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 쪼례

# 1.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정 1992.05,12 조례제1203호 개정 1993.01.09 조례제1235호 전문개정 1997.05.15 조례제1491호 개정 2001.10.17 조례제1786호 개정 2002.05.02 조례제1817호 개정 2003.05.22 조례제1849호 개정 2004.01.12 조례제1901호 개정 2006.09.25 조례제2074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9.25]

# 제2조(정의)

다목적복지회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 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다목적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 7.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복지시설

제5조(사업내용) 복지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사업
-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 7.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 제6조(이용자의 범위)

- 1.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복지 회관 이용자의 보호자 근무지가 성남시에 있는 경우에는 타시군 거주자도 이용할 수 있다.
-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저소득주민
  - ②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 ③ 직업·부업훈련, 취업알선 필요 주민
  - ④ 유아,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6.09.25]

-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기타 시장이 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복지회관의 운영[개정 2001.10.17])

①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0.17]

- ② 보육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등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 준과 종사자 자격을 갖춘자로 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을 갖춘자로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정에 의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하 수 있다.
-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을 단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지원기준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재가복지봉사센터, 보육시설, 직업훈련실시기관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계약)

-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탁자를 선정하되, 위탁자의 재정적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결과(평가를 한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시 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수탁자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의 시설가액에 해당되는 보험을 계약체결일 부터 15일이내로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 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위원회 구성)

①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심의위원회

- (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은 사회복지 및 유아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복지회관의 기본적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2. 복지회관 및 보육시설의 위탁자 선정 및 위탁의 취소·해지등에 관한 사항
- 3. 기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회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다.

####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를 회관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16조(위탁의 취소)

-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수탁된 시설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

-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복지회관의 수탁자격과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본항신설 2001.10.17]

### 제17조(지도감독)

- ①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중 1회 이상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제19조(사용료)

- ①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 관리하되, 이를 종 사원의 인건비, 시설의 유지비 등 관리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사용료의 면제)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 3.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1조(손해배상)

- ①시장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하다.
- ②시설이용자는 시설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개정 1992.05.12 조례제120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3.01.09 조례제123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1997.05.15 조례제149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제178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2.05.02 조례제181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3.05.22 조례제184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제190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개정 2006.09.25 조례제207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전부개정 2009.04.27 조례제23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